

JBedunet 대화명
“공부보다 계약이 제일 쉬웠어요”

임성택의 간추린

계 약 법 령 해 설

2009. 9

목 차

제 I 장 계약의 특징	1
1. 계약의 일반원칙	1
2. 지방계약법령의 적용범위	1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4. 계약의 원칙	1
5. 지방계약법령 구성체계	1
6. 계약관련 용어 정리	3
7. 낙찰하한을 결정	5
8. 적격심사대상 입찰 및 수의계약 시설공사 비교	7
제 II 장 시설공사	9
1. 건설산업의 구분	9
2. 건설업의 종류	9
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2
4. 건설공사의 하도급	12
5. 전기공사	17
6. 정보통신공사	18
7. 소방시설공사	19
8. 문화재공사	20
9. 환경관련공사	20
제 III 장 입찰(수의) 및 예정가격	21
1. 입찰	21
2. 절차별 세부내용	23
3. 수의계약	26
4. 입찰(견적)참가 배제	33
5.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33
6. 입찰무효	33
7.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33

8. 금액기준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개찰후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34
9. 공고 및 개찰시 주의사항	35
10. 제한입찰계약	36
11. 예정가격	39

제Ⅳ 장 적격심사	50
1. 적격심사제도 개념	50
2. 적격심사 절차	50
3. 적격심사 적용대상	51
4. 심사방법	51
5. 적격심사 배점기준	52

제Ⅴ 장 계약	55
1. 계약의 체결	55
2. 계약문서	55
3. 계약이행보증	58
4. 하자보수보증제도	60
5. 연대보증인제도	62
6. 공동계약	63
7. 계약의 이행	64
8. 선금지급	67
9. 대가의 지급	70
10.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71

제Ⅵ 장 참고

○ 예산용어 해설	72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73

제 I 장 계약의 특징

1. 계약의 일반원칙

-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원칙,신의 성실의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 대상이 됨(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은 행정소송 대상)

2. 지방계약법령의 적용범위(§지방계약법 제2조, 제3조)

가. 지방자치단체

나. 교육행정기관

-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중 공립학교(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국가계약법 적용)
 -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는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규칙 제33조에 의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적용

§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규칙 제33조 3항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법령이란>

- 일반 추상적 규범(반대, 개별규체적인 것 행정처분), 강제적 규범(강제 동반 없는 도덕과 차이가 있음)
- 광의의 법령: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 규칙),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의하여 발령하는 훈령, 예규, 고시)
- 협의의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 상호간의 적용원칙>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위반할 수 없음
 - 예) 법률과 대통령령이 모순되는 경우 법률이 우선적용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
- 신법(후법)우선의 원칙
 - 최근에 만들어진 법은 종전에 만들어진 법에 우선하여 적용
 - ⇒ 3가지가 충돌할 경우 상위법우선, 특별법우선, 신법우선원칙 적용

♠ 사무관리규정 제7조에 의한 법규, 지시, 공고문서등으로 구분

- 법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 지시: 훈령,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 공고: 고시·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계약법 제4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법, 건축사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공탁법, 인지세법, 국세징수법, 고용보험법 등

4. 계약의 원칙 (§지방계약법 제6조)

○ 상호대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특약금지의원칙

5. 지방계약법령 구성체계

○ 법 제42조문, 시행령 8장 137조, 규칙87조, 예규, 고시

예규(8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6장으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8장으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고시명(2개)	내 용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 근거: 지방계약법 제5조 제1항 ○ 대상: 15개 시·도 ○ 금액: 공사 229억원이상, 물품·용역 3.1억원이상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고시	○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15조 -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g2b) ○ 근거 및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취득처분(취득제외) - 지정정보처리장치: 온비드(onbid)

6. 계약관련 용어 정리

가. 추정가격: 국제입찰 및 수의계약대상 여부, 내역입찰 여부, 지역제한 대상 여부, 실적제한대상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한 가격으로 예산상금액, 당해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관급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

나. 추정금액: 추정가격 + 관급재료비 + 부가가치세

다.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확정하기 전 계약담당자가 검토한 가격

라. 복수예비가격: 전자수의견적이나 입찰에서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임의로 추출한 가격(+7, -8)

마.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정한 가격
(전자견적 및 적격심사 입찰은 g2b에서 결정)

바. 낙찰하한율: 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을 만점을 획득한 경우 최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입찰가격 이외의 적격심사 항목 만점 획득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이론상 최저 투찰율을 말함. 입찰시 87.745%등 명시조항 없음)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받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금액기준에 의한 1인견적 수의계약은 낙찰하한율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사례

문	<p>○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2천만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하한율이 없는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시 낙찰하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p>
답	<p>○ 계약담당자가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공사계약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이상 전자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p>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사례

문	<p>○ 실 용역금액 낙찰하한율은 90%이나 공고문에는 87.745%로 공고하여 개찰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p>
답	<p>○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의 규정에 맞게 입찰 및 개찰을 하였으나, 입찰공고문에는 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내용·하자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입찰공고문에 낙찰하한율을 착오 기재한 경우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경우 입찰취소를 하고 새로운 입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p>

7. 낙찰하한을 결정.

가. 낙찰하한을 결정공식(\$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예시 1,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7)

가) 수행능력(경영상태, 접근성) 평가 (10점)

나) 입찰가격 평가(90점)

- 적격통과기준은 95점 이상이므로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는 10점 만점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입찰가격은 8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85점으로 간주하고 입찰가격을 계산하여야 함

○ 수식: $90-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85)$

○ 수식에 의한 입찰가격계산

$$90-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85$$

$$90-85=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5=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5/20=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1/4= |(0.88 - x) \times 100|$$

$$1/4= |88-100x|$$

$$0.25= |88-100x|$$

$$x=0.8775$$

“입찰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0.8775를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에 다섯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반올림할 최소의 수는 0.87745이므로 입찰가격의 87.745%가 낙찰하한율이 됨.

2)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평가기준(예시 2,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4)

가)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 (30점)

나) 입찰가격 평가(70점)

- 적격통과기준은 95점 이상이므로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는 30점 만점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입찰가격은 6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낙찰

하한율은 입찰가격을 65점으로 간주하고 입찰가격을 계산하여야 함

○ 수식: $70-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65)$

○ 수식에 의한 입찰가격계산

$$70-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65$$

$$70-65=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5=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5/4=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5/4= |(0.88 - x) \times 100|$$

$$5/4= |88 - 100x|$$

$$1.25= |88 - 100x|$$

$$x = 0.8675$$

“입찰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0.8675를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에 다섯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반올림할 최소의 수는 0.86745이므로 입찰가격의 86.745%가 낙찰하한율이 됨.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예시 3)

가) 경영상태 평가(30점)

나) 입찰가격 평가(70점)

○ 적격통과기준은 **88점 이상**이므로 경영상태평가는 30점 만점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입찰가격은 58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58점으로 간주하고 입찰가격을 계산하여야 함

○ 수식: $70-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text{입찰가격점수}(58)$

○ 수식에 의한 입찰가격계산

$$70-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58$$

$$70-58=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12=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3=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3= |(0.88 - x) \times 100|$$

$$3 = \lfloor 88 - 100x \rfloor$$

$$x = 0.85$$

“입찰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낙찰하한율은 0.85를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에 다섯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반올림할 최소의 수는 0.84995이므로 입찰가격의 84.995%가 낙찰하한율이 됨.

8. 적격심사대상 입찰 및 수의계약 시설공사의 비교

구분	입찰	수의계약	비고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수의계약(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포함)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미포함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좌동	
입찰보증금	100분의 5이상 §계약법시행령 제37조	없음	수의계약 공고시 입찰용어 사용금지
공고문	00 공사 입찰공고	00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계약운영요령	
공고기간	10억미만 7일 10억-50억미만 15일 50억이상 30일 긴급 5일전 §계약법시행령 제35조	3 - 5일 §수의계약운영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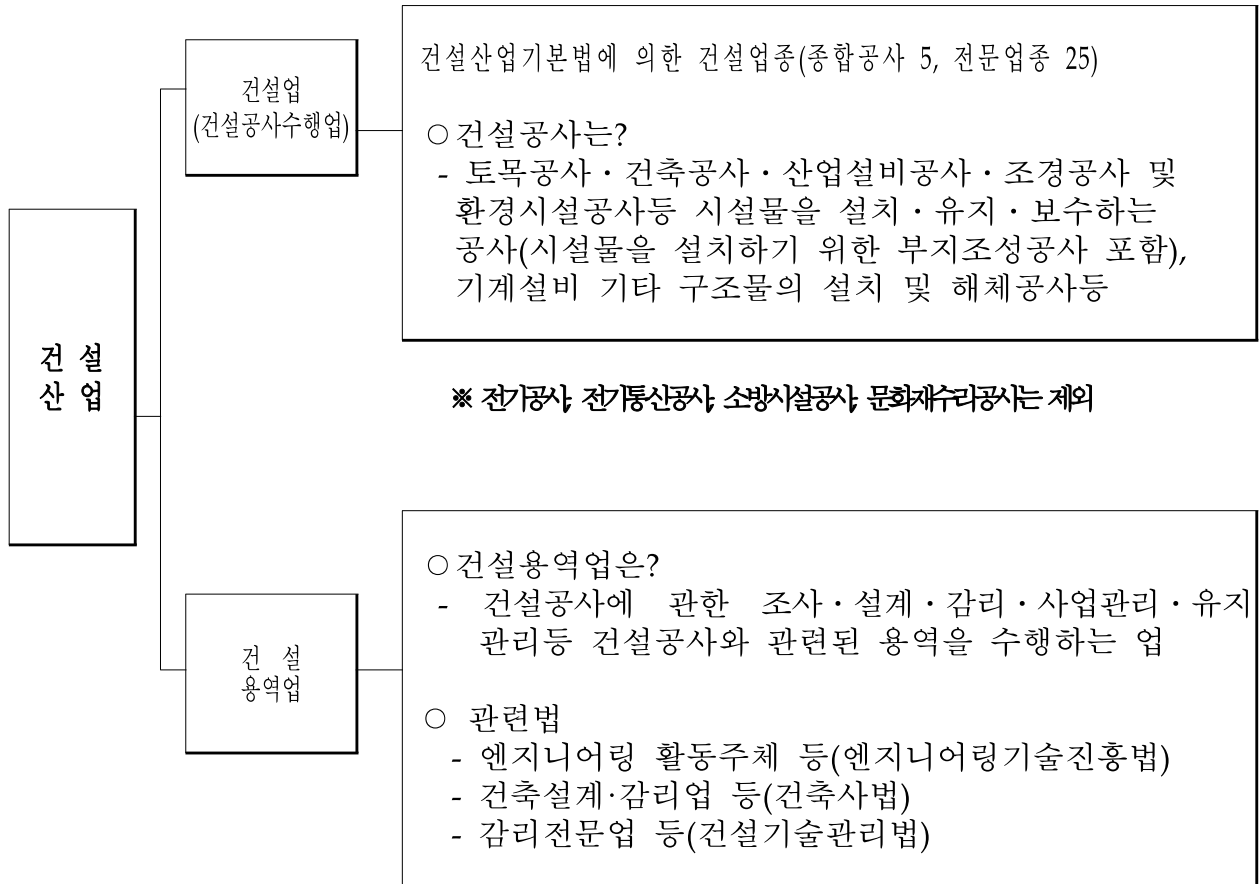
구분	입찰	수의계약	비고
적격심사	실시 §계약법시행령 제42조	없음 (하자구분곤란-수의계약대상 공사평가표, 천재지변-적정평가) §수의계약운영요령	
계약체결전 계약포기	부정당업자제재 §계약법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 제재는 하지 않으나 해당 자치단체와 1년간 계약체결금지 §수의계약운영요령	
계약후 계약포기	계약해지 및 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계약법시행령 제92조	좌동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사례

문	○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전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면 도교육감소속기관만 해당되는지?
답	○ 당해 자치단체란 - 발주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말함 ○ 지방교육기관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산하에 있는 교육청·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방침을 정하여 지역교육청 단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제 II 장 시설공사

1. 건설산업의 구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2. 건설업의 종류(법개정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VI. 참고. [별표1]

단,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간 연계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시공 가능한 공사

- 1) 전문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으려는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은 예외입니다.

-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나) 공사내용이 다수의 전문 업종과 관련되나, 주된 공사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3)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전문공사 25개> VI.참고.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제2종,제3종)
 24. 난방시공업(1종,2종,3종) 25. 시설물유지관리업

다. 종합·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대공사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종합공사와 그 부대공사 함께 도급받을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다.

부대공사의 범위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에정금액이 전체 공사에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① 공종간의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
-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③ 기타 여건 감안 등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 · 기간 · 시기, 지반 등 특수여건, 사업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등

라. 경미한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 불필요

-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석도설치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 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사례

문	○ 경미한 공사도 설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답	○ 설계는 원가를 산정하는 자료라기보다는 시공계획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설계를 작성해야 하는 것임

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가.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3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 금액중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함. 다만, 1건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제외(조건 동시충족)

나.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서면통보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한 통보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FAQ(2006.3. 건설교통부)

문	○ 1건의 공사금액의 의미는?
답	○ 1건의 공사금액이라 함은 건설업자(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포함)가 도급받은 도급계약금액(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을 말함

문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도 통보해야 하는지?
답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시공의무대상 공사가 아님

4. 건설공사의 하도급

가.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2조)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하도급 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나.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예외)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

- 2)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예외)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다. 건설공사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과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6조)

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1)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100분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2) 심사의 예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하수급 예정자, 하도급계약 예정 금액이 포함된 하도급관리계획을 심사하여 수급인을 결정한 경우(50억 이상)

- 3)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함.
-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하도급내용 검토 사항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업종 및 면허가 적정한지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액 이상인지(특수조건 명시 등)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등)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등 (하도급직접지급 합의서)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자는 유자격자로 배치하였는지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7조의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82%미만인지

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4조)

-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2)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직접공사비 항목”이란?

-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

바. 하도급대금 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1)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 하수급인의 시공부분 상당액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2)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 예외 : 하도급 금액 4천만원이하인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할 경우 등
- 3) 수급인이 선금을 받은 때에는 선금급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급 지급

사.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직접지급 할 수 있는 경우

-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에정가격에 대비하여 100분의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

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거래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 1)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확인
- 해당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여부 확인

- 2)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 3)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원도급자에 대한 대가지급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납세증명서 제출

채권압류 질의(2008.11.17. 공정거래위원회)

문	○하도급계약 및 직접지급합의후 채권압류 발생시 공사대금 지급여부?
답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3자 합의가 가압류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라면 발주자는 가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3자 합의시점이 가압류 보다 먼저 이루어 졌다면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임 ○ 그러나, 가압류가 3자합의 시점보다 먼저 이루어 졌다면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공탁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임

※채권압류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차. 하도급대금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개정중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및 건설자재납품대금 등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

가. 전기공사업 범위

- 전기공사업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전기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시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나. 전기공사 시공자격

- 1)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전기공사업법 제3조)
- 2) 경미한 공사로서 공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에 참여할 수 있음.
 - 꽂음접속기, 소켓, 로우젯,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공사
 - 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교환공사
 - 벨, 인터폰, 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시설 소형변압기(2차측전압 36V이하) 설치 및 2차측 공사
 -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 내는 공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KW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단,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공사)
- 3) 국가·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는 직접 시공할 수 있음
 -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공사

다. 분리발주 의무(§전기공사업법 제11조)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함. 다만,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

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발주가 가능

라. 하도급의 제한(§전기공사업법 제14조)

- 1) 전기공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됨. 다만,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하도급하거나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함
- 2) 원도급자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6. 정보통신공사

가. 정보통신공사 범위(§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 1) 정보통신공사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2) 통신설비 공사 : 통신선로설비,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설비, 이동통신설비, 위성통신설비, 고정무선통신
- 3) 방송설비 공사 : 방송국설비, 방송전송·선로
- 4) 정보설비 공사 : 정보제어·보안설비, 정보망설비, 정보매체설비, 항공·항만통신설비, 선박의통신·항해·어로설비, 철도통신·신호설비
- 5) 기타설비 공사 :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나. 공사의 제한(§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 다만 다음과 같이 경미한 경우는 예외로 도급·시공 가능함
 -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기간 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경우
 - 경미한 공사의 경우
 - 통신구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다. 공사의 분리발주(§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 1)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
- 2) 다만 아래의 경우 통합 발주가 가능함
 -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는 터널, 댐, 교량 등 대형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비상재해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또는 통신구설비공사로 분리하여 발주가 곤란한 경우

라. 하도급의 제한(§정보통신공사법 제31조)

- 1)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2) 다만, 아래의 경우는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음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재하도급은 금지함
 - 다만, 하도급금액의 50%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서면승락한 경우 재하도급을 예외적으로 인정

7. 소방시설공사

가. 소방시설공사 범위(§소방시설공사법 제2조).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 타 공사와 분리발주 해야 하는 법규는 현재까지 없음

나. 하도급의 제한(§소방시설공사법 제22조)

- 1)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 가능(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청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발주청은 하도급인을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음)
- 2) 소방시설공사의 완공 검사(§소방시설공사법 14조)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하게 되며, 감리대상(연면적 1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시설물은 감리결과 보고로 같음

8. 문화재공사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수리업자(§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7조)

- 보수단청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보수단청업자로 등록된자.
- 조경업자 : 일반조경공사업, 전문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을 한자.

9. 환경관련공사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석면제거 등 환경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설치·제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 분	자 격 요 건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폐기물처리 (§폐기물관리법)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② 폐기물 최종처리업 ③ 폐기물 종합처리업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자 (§소음·진동규제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지 시설업자
○ 석면해체·제거 (§산업안전보건법)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 석면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등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제Ⅲ장 입찰(수의) 및 예정가격

1. 입찰

가 입찰의 개념

-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나. 입찰의 성립(§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조)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

다. 입찰 참가자격(§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 경미한 공사의 입찰(시공)참가자격(§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일반건설공사는 공사에정금액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 1천만원미만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입찰(시공) 참가자격이 있음(공사에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보안측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적합판정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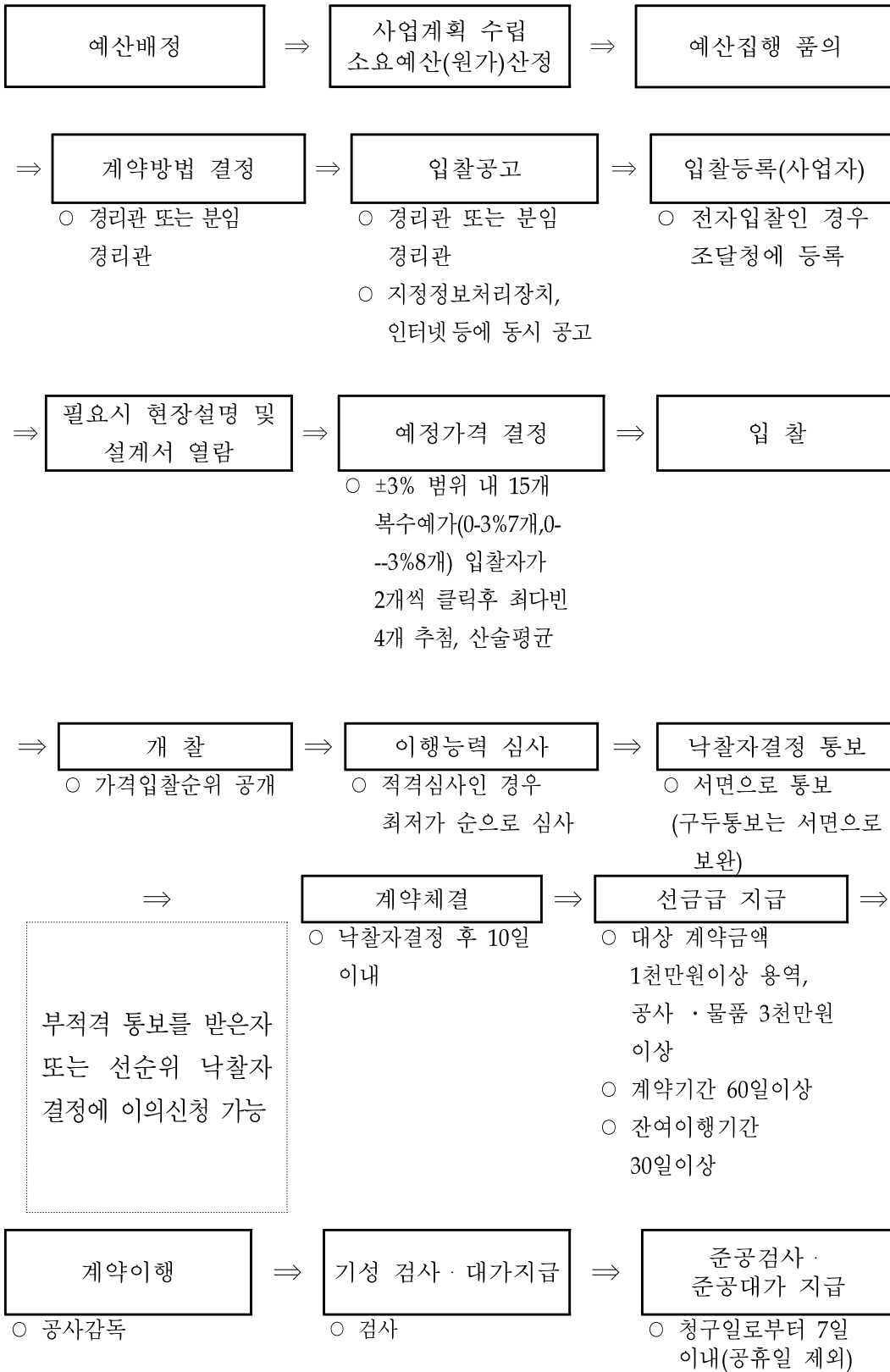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사례

문	○ 표목이나 그림을 구매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개인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	○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동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2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사례

문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은 등기일인지 변경등록일인지
답	○ 지역제한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본점)가 당해지역에 있는 자(법인)으로 하고 있는 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기일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자, 불명확한 경우 면허등 등록일자로 합니다.

라. 입찰순서



2. 절차별 세부내용

가. 예산배정(§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 1)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함
- 2)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6조)

나. 예산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품의

- 1) 예산집행품이란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 이러한 의사결정행위는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 2) 예산집행품의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며, 사업계획수립(세부사업계획 수립)도 넓은 의미에서는 집행품의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선금및대가지급요령)
- 3) 세출예산 집행품의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① 공사집행(수선) ② 물품의 구매·제조·수리 ③ 용역의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4) 품의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예산은 배정(재배정)되어 있는지 여부, 예산의 범위 또는 기준 내의 단가에 의한 산출인지 여부(§지방재정법 제67조, §예산편성기본방침) 등

다. 계약방법의 결정

- 1) 계약목적물의 분류
 -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용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계약체결방법
 - 공동 도급 계약인지 단독 계약인지 여부
 - 확정계약인지, 개산계약인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인지 여부
 -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여부
 - 장기계속계약인지, 계속비계약인지, 단년도계약인지
 - 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대상 여부 등
- 3)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방법을 선택 또는 결정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입찰여부를 판단

라. 입찰공고

1) 입찰공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전에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통지행위

○ 입찰공고의 내용

○○○○○공고 제 호 ※ 공고대장의 연번호
00시설공사 입찰공고 (지역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물품구매·제조)

- 공사명 00초 화장실 증축공사 ○ 개요 화장실 2실(160㎡)증축
- 공사현장 00초
-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0일
- 추정금액 00원
- 추정가격 · 관급 · 부가세
- 기초금액 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전자계약
-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00법 제0조의 규정에 의한 00신고(면허)를 필한 자로써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00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소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일시: ○ 장소: ○ 자격:
- § 현장설명 생략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는 문구 삽입

5. 입찰참가 신청(투찰 기간과 공고기간은 같을 필요는 없음)

- 일시:2009. 10. 10. 09:00~2009.10.13. 10:00 ○ 장소:입찰집행관 PC

6. 개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입찰은 입찰마감 후 2시간 이내에 개찰]

- 일시:2009. 10.13. 11:00 ○ 장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액 ○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의 귀속
- § 전자입찰시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는 내용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다는 문구삽입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00호) 제0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0호를 적용하고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00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등 제시는 가급적 생략)
-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취득한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 결과 시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대상 업종은 00공사업입니다.
 -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을 명시하여 적격심사(토목건축공사 업일 경우 업종평가 업종 명시)
-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00에서 발행한 000자료중 자기자본비율 00.00%,유동비율 00.00%를 기준적용 합니다(용역,물품) 한국은행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 적용 등

9.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동계약이 가능한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사항과 공동도급 이행방식, 지역의무 공동도급 참여기준 등

11. 보험료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12. 기타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물품구매·제조)유의서, 공사(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간(재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생략)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00과 ☎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 ○ ○ ○ ○ 경 리 관(분임경리관)

(학교의 경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거 분임경리관으로 공고)

2) 입찰공고일(§지방계약법 시행령 15조)

- 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100억이상은 현장설명실시)
- 현장설명일이 있는 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 추정가격 10억~50억 미만: " 15일 전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33일 전
- 현장설명일이 없는 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 추정가격 10억~50억 미만: " 15일 전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30일 전
- 물품 제조·구매·용역: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7일전
 - ※ 긴급공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5일 전까지
- 공사의 현장 설명
 - 현장설명의 의무적 참가 및 입찰 무효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 ※ 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 중 1인(대표자의 위임)만 참가해도 충족
 - 현장설명 참가자격
 -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3) 입찰공고 방법(§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

3. 수의계약

가. 수의계약 적용(§지방계약법 제9조)

-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공사 2억원,전문공사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등

- 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 계약시의 계약금액)

다. 수의계약내역의 공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운영요령)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내용을 공개
- g2b를 이용한 2인견적 수의계약 및 정보공개 미대상은 제외

라.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2조)

- 입찰 참가자격 준용

마. 수의견적제출 방법 및 공고일 (§수의계약운영요령)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사례

문	○ 수의계약에 낙찰된 자가 견적제출안내 공고 이전에 상호, 대표자, 주소가 변경되어 변경등기 되었음에도 이전 상호,주소,대표자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자와 계약체결 가능한지
답	○ 발주기관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에서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 지방 계약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르게 되는 것인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이며, 이경우의 변경등록사항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서 입찰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상호와 대표자 명의를 변경등록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자견적을 제출하였다면 입찰과 동일하게 무효처리함을 안내공고에서 명시하였다면 무효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구분	유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소액수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 공사	용역·물품·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로써 V-1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 (V-1 참조)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초과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초과	·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소액수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 공사	용역·물품·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구분 곤란 등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나,다,마)				
천재지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바~거, 6호~8호)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					

V.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

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이라 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2)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 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5)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1인 견적제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인이상 추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7)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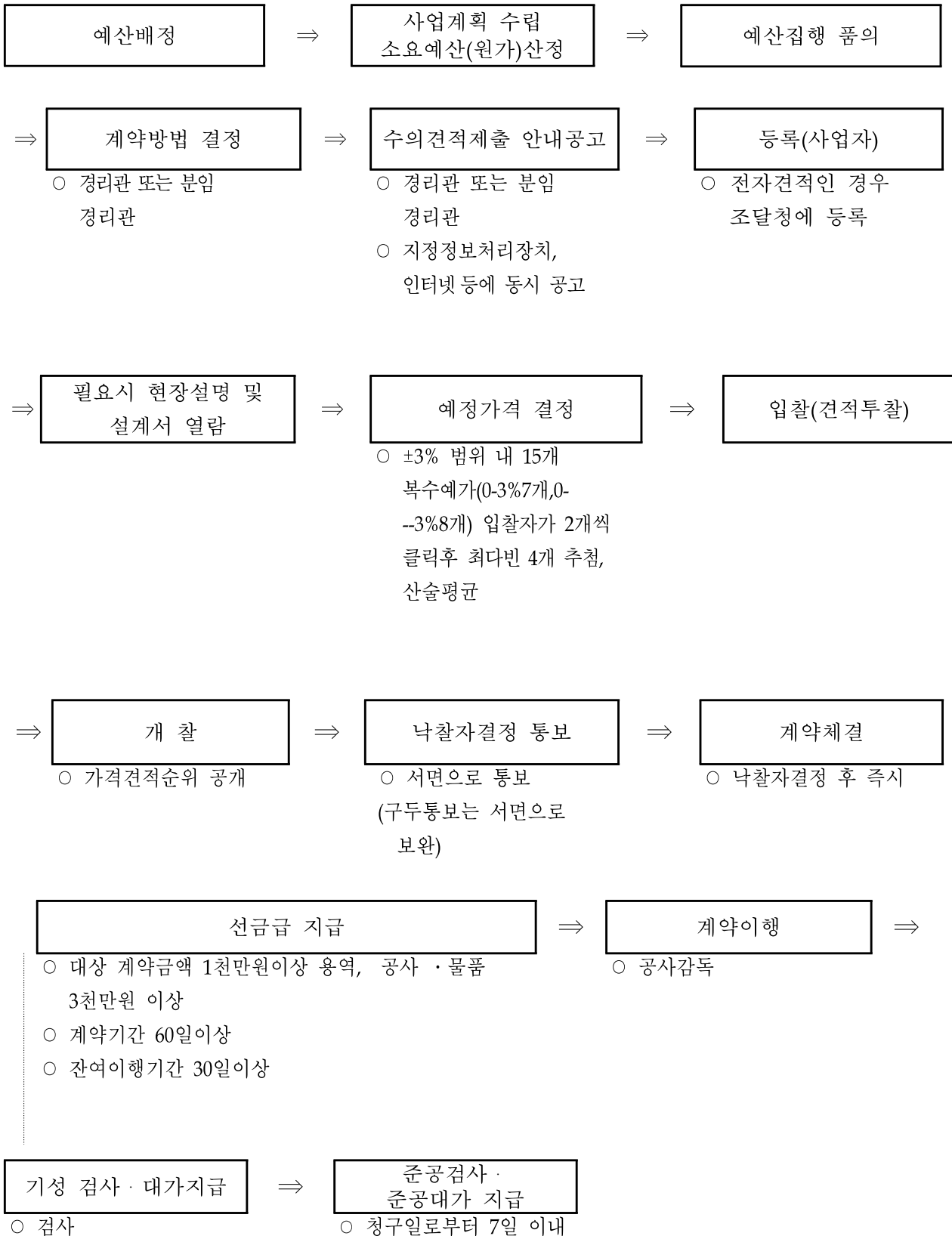
◇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할 수 있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사례

문	○ 소액수의 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제제 처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
답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 향후 1년간 당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체결을 하지 못함을 통지하고 - 결격자명부 등재, 산하·소속기관 통보 및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닌 견적서 제출이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나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는 하지 아니함. ○ 계약이행중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제·해지 통지를 하고 결격자명부 등재 및 소속기관 등에 통보

바. 수의계약(소액수의) 순서



사. 수의견적 공고문 예시

○○○○○공고 제 호

※ 공고대장의 연번호

00시설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물품구매·제조)

- 공사명 00초 화장실 증축공사 ○ 개요 화장실 2실(160㎡)증축
- 공사현장 00초
- 공사기간 착수일로 부터 0일
- 추정금액 00원
- 추정가격 · 관급 · 부가세
- 기초금액 00원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적격심사제외대상, 전자계약
- 청렴계약제 대상공사(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00법 제0조의 규정에 의한 00신고(면허)를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00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일시: ○ 장소: ○ 자격:
- § 현장설명 생략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는 문구 삽입

5. 견적참가 신청

- 일시:2009. 10. 10. 09:00~2009.10.12. 10:00 ○ 장소:견적집행관 PC

6. 개찰

- 일시:2009. 10.12. 11:00 ○ 장소: 견적집행관 PC

7. 입찰보증금(수의견적은 입찰이 아님으로 입찰보증금은 없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하한율 87.745%등 제시는 가급적 생략)
-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견적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의무효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동계약이 가능한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사항과 공동도급 이행방식 등

11. 보험료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 견적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12. 수의계약의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별지1에 대한 각서를 계약체결전 징구한다는 사항

13. 기타사항

- 견적참여자(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입찰(물품구매·제조)유의서, 공사(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장설명사항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 유찰시 재견적 시간(재견적을 하지 않을 경우 생략)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00과 2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 ○ ○ ○ ○ 경 리 관(분임경리관)

(학교의 경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거 분임경리관으로 공고)

4. 입찰(견적)참가 배제(§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 가.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
- 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불참자
- 다. 제한입찰의 경우 제한내용에 미달되는 경우
- 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면허 등이 취소된 자
- 마. 수의계약운영요령 (별지1)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5.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가. 재입찰(현장입찰의 경우)

- 1)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2)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 3)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 하며,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재공고 입찰

- 1)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2) 재공고 입찰 시 최초 입찰시 참가하지 않았어도 추가 참여 가능
- 3) 참가자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새로운 입찰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입찰가능 (조건변경 가능)

6. 입찰무효(§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2)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3)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불참자가 한 입찰 등

7.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 다만, 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을 우선함

8. 금액기준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개찰후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 선정방법(§수의계약 운영요령)

- ▷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결 격 사 유

-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일반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마)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사)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자치단체장,의원 등)
 - 아)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차)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 관급공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용역

-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

9. 공고, 개찰시 주의사항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사례

문	○ 기초금액 입력오류가 입찰무효사유가 되는지
답	○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초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라면, 낙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예정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항이며,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사례

문	○ 기초금액대비 $\pm 3\%$ 상당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어야 하나 전산착오로 인하여 복수예비가격이 $\pm 2\%$ 범위 내에서 작성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개찰한 경우와 서로 다른 개찰결과가 발생됨으로써 낙찰자가 사실상 뒤바뀌는 중대한 하자일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대다수 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착오 등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복수예비가격의 범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당해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사례

문	○ 낙찰하한율이 86.745%인데 실수로 87.745%를 적용하여 개찰하였을 경우는?
답	○ 낙찰자 결정 이전에 가격평점산식(낙찰하한율)의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격평점산식(낙찰하한율)을 재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2인 이상인지 확인(g2b 콤보박스 확인)

- g2b개찰시 개찰조서 순위 반드시 확인

10. 제한입찰계약

- 제한입찰계약은 당해목적물, 동일한실적, 기술보유현황, 시공능력공시액, 지역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시키는 방법
가.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한의 종류	계약 목적물	제한요건	비고
①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추정가격 30억원(3억원) 미만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1>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0.7배 이내) 가능한 규모 또는 물량으로 제한(시설 1/3)
②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별표 1>의 30개 공사 참조
	물품·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 	<별표 1> 참조
③시공 능력 공시액으로 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
④지역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제지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에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3.1억원 미만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제지를 둔 업체로 제한
⑤설비로 제한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입찰기준을 정하고 등록된 그 사업자로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물품의 제조 및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능력 요구 	
⑧중소기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한
⑨재무상태	공사·용역 및 물품·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의 상태가 있는자의 배제 	

- ※ ④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 **시공능력공시액이란** 당해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기관(협회)이 업체의 시공할 수 있는 규모를
평가해서 공표함

< 별표 1 >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요구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①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②활주로공사 ③지하철공사 ④저수·유조 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댐 축조공사 ⑥취수장, 정수장, 우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송·배수관공사 ⑧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독크 축조공사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설치공사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문화재 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심정공사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특수한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 ①스프링공법 또는 철평공법에 의한 공사
- ②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한 설비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제3호·제4호 관련)

- ①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에 따라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③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의 제조

나. 제한의 기본원칙

- 1)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함
- 2) 다음의 각호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 예 외 >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시공능력공시액 제한,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3)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가) 지역제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한다.

나)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 ① 발주(사업)부서에서는 공사시공에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 1호에 따라서 설계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 ②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후 설계
- ③ 발주(사업)부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전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11. 예정가격(§지방계약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 요령)

가. 예정가격

○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 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함

나.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1)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 장기계속공사(장기물품제조 등)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
- 3)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단가 가능)

다. 예정가격의 작성(§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 요령)

1)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라. 예정가격의 비치

○ 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함.

마.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계약법시행령 제8조)

- 1)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2) 추정가격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계약중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제외

- 3)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4)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 5) 시행령 제9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경우 등

바.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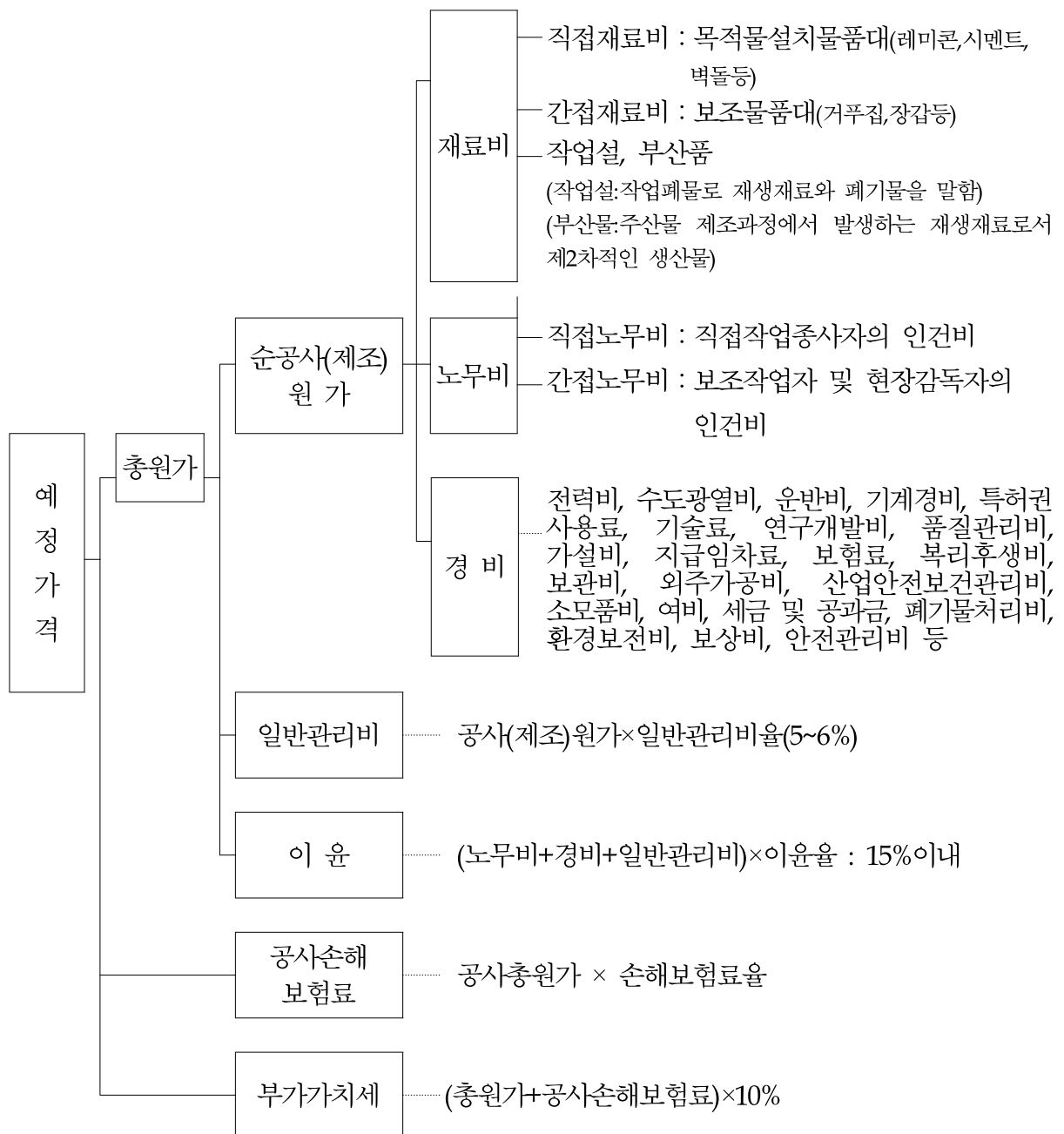
사. 예정가격결정 순서

적용 순위	결정방법	내 용
1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 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동 물품을 직접제조 생산하는 사업자)
2	원가계산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실적공사비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3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유사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아. 주의사항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
- 2) 원가계산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함
- 3)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

자. 공사의 원가체계



1)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레미콘,시멘트,벽돌 등)
 - 간접재료비
 -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접착제,거푸집,장갑 등)
 - 작업설,부산물
 - 작업설: 작업폐물로서 부스러기,파쇄등으로 재생자료와 폐기물체로 구분
 - 부산물: 주산물의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생재료로서 2차적인 생산물
- ※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함.

2) 노무비

- 직접노무비
 -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 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시중노임적용
- 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 인건비
 -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이나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활용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사규모별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14.5%) / 3 = 15.5%

3) 경비

○ 경비의 개념

-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 경비의 주요 비목

- 산재보험료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08.12.31)
- 대상: **모든 건설공사**(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 산정방법: 노무비(직접+간접)×요율

- 고용보험료

- 근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5호,'09.2.12)
- 대상: **모든 건설공사**(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 산정방법: 노무비×요율
-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조달청공고 2008-27호.'2008.11.18)

-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2.43%
-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1.49%
-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율(1만분의 478)
- 보험료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 정산
 - 기성 및 준공금 지급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 부담금 상당액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용역은 별도의 정산규정이 없음)
 - 설계변경으로 인해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비율만큼 보험료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
 - 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2008-67호. '08.10.22)
 - 적용대상: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계상기준
 - ⊕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재료비(관급비포함)+직·노)×요율
 - ▶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재료비(관급비제외)+직·노]×요율×1.2를 초과할 수 없다
 - ⊕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재료비(관급비포함)+직·노)×요율+기초액
 - ▶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재료비(관급비제외)+직·노]×요율+기초액×1.2를 초과할 수 없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대 상 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 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정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부가세를 제외하고 정산함. (예, 안전보건비가 100천원일 경우 부가세 제외하고 100천원을 정산하여야 함)]

※설계변경시에는 조정하여 반영

-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에 의하여 공사금액 3억원~120억(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5조 의거 **100톤이상은 분리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추가 발생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비 반영

-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제외**)
- 정산(§건설기술관리시행규칙 제28조)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산함.** (예, 환경보전비가 100천원일 경우 부가세 제외하고 100천원을 정산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 제외)
- 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법률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 적용대상: 추정금액 5억원이상 건설공사(하도급 부분에도 해당금액 명시)
- 정산: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현장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비용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35호)
- 정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2009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전라북도교육청 (2009년도 상반기)

(단위:%)

공사 규모	간접노무비	산재, 고용보험료 (노)×율	건강,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재+ 직노+ 관급자재)×율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재+ 직노+ 산경)×율	일반관리비		이윤 (노+ 경+ 일)×율	
	(직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 노)×율		(재+ 노+ 경)×율			
	건축		(직노)×율	(직노)×율		건축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통신, 소방공사		
5억 미만	10.0	[산재보험료] : 3.4 [고용보험료] : 0.67 5등급이하	[건강] : 1.49	[퇴직] : 2.3	○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 특수 및 기타 : 1.24 ○ 중건설 : 3.18	5.0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 0.3 : 주택(신축), 조경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하천,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5.0	5.0	15.0	
5억-30억 미만	10.0				○ 일반건설 - 갑: 1.81 + 3,294천원 - 을 : 1.95 + 3,498천원 ○ 특수 및 기타 - 0.91+ 1,647천원 ○ 중건설 - 2.15+ 5,148천원	5.0		5.0	5.0		
30억-50억 미만	10.0				○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 특수 및 기타 : 0.94 ○ 중건설 : 2.26	5.0		5.0	5.0	5.0	12.0
50억 이상	10.0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7-4)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 노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고시 제2005-53호, '05.12.30, 2천만원 적용제의 고시(제2004-73호) 폐지됨)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에정금액 5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효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효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 (2005.7.1개정)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토목및산업설비 :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3%+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6%+6.6백만원]×공기(년)
 - 건축 :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8%+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22%+6.6백만원]×공기(년)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34.6억(조사금액 [부가가치세포함])미만 : 0.018%, ○ 34.6억(조사금액 [부가가치세포함])~100억 (추정가격)미만 : 0.027%,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26%,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 및 산업설비 : 0.018%, - 건축 : 0.023%
- 턴키(대안)공사 : 0.028%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 2006.1.11) : 적용시기 '06.1.1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및 사무용품비,여비·교통통신비,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5-514호)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효율적용 ·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 1등급 : 550억원이상, 2등급 : 550억~330억원, 3등급 : 330억~200억원, 4등급 : 200억~130억원, 5등급 : 130억~ 80억원, 6등급 : 80억~ 50억원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7.31이전
 -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원가계산서 검토사항>

항 목	검 토 내 용	비고
원가계산 작성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식) ※ 참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안부 예규) 	
각종 제경비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식 적정여부 ※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실적공사비 제경비율」 조정계수(상·하반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참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 수수료 제외 여부 ※ 참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비 계산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예':1.81%시 3,294천원)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건축, 토목, 조경 등)에 포함하여 중복 산정 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구 분	적용 방법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비고
간접노무비	(직노) × 율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재보험료	(노) × 율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고용보험료	(노) × 율		
건강·연금 보험료	(직노) × 율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 율	추정금액 5억원이상 건설공사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300억이상)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재+직노+관급) × 율	<재료비(관급포함)+직노>의 합계액 ※ 관급비 제외 × 1.2배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금액 적용	
기타 경비	(재+노) × 율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 합계액	
환경보전비	(재+직노+산경) × 율	제비율적용기준 참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일반관리비	(재+노+경) × 율	추정가격 기준	
이 운	(노+경+일) × 율	추정가격 기준	
공사손해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43-9)

3. 적격심사 적용대상(§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가.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 일괄입찰, 대안입찰, 300억원 이상공사, 건설기술공모(발주자 선택사항)
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나. 적격심사 비적용 대상

- 1) 300억원 이상 공사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물품은 최저가입찰 (중소기업자간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
- 2) 물품·용역의 경우에 공모에 의한 낙찰자결정,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 2단계 입찰,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결정, 최적가치낙찰자결정,희망수량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유사물품복수입찰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가능

※ 다만 지식기반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계약 우선대상임

4. 심사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가. 입찰공고에 계약목적 내용에 따라 적격심사기준, 실적인정규모, 평가 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업종별 평가비율, 서류제출기한 등을 명시

나. 개찰 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서류 제출 요구 (일정순위까지 동시 요구할 수 있음)

다. 기재출서류가 미비·오류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음(7일 이내, 수해복구공사는 3일)

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심사(수해 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불가피한 경우 3일연장(수해복구사업 2일)

마.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에 따라 종합평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바. 낙찰자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서대로 심사

아. 선순위 낙찰자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부적격 통보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업체는 3일 이내 재심 요구 가능, 5일 이내에 재심 실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 계약체결 이전: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결정 통보취소
-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적격심사에 통과하여 낙찰자 결정을 통지한 이후 업체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5. 적격심사 배점기준

<시설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1 ~ 별지7) -종합공사

구 분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별지1)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별지2)	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별지3)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별지4)	10억원 미만 3억이상 공사 (별지5)	3억미만 공사 2억원 이상 (별지6)	2억원 미만 (별지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공경험	12	15	15	15	10	5	4.8
경영상태	13	15	15	15	10	5	5
접근성					+0.5	+0.5	0.2
신 인 도	±1.2	±1.2					
기술능력	15						
하도급 계획 적정성	12	10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적정성	14	10					
시공 여유율	4						
입찰가격	30	50	70	70	80	90	90
적격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	92점 (79.995%)	95점 (85.495%)	95점 (86.745)	95점 (86.745)	95점 (87.745)	95점 (87.745)	95점 (87.745)

<재해복구공사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적용>

< 기술용역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 별표5)

심사항목	용역 규모 별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용역)					
	30억 원 이상 (별표1)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별표1)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별표2)	5억 원 미만 3.1억 원 이상 (별표3)	3.1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별표4)	2억 원 미만 (별표5)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수행능력	67	67	47	27	27	10
지역업체참여도	3	3	3	3	3	-
입찰가격	30	30	50	70	70	90
※ 낙찰가능 입찰가격 하한선	예정가격의 72.995% 이상	예정가격의 77.995% 이상	예정가격의 85.495% 이상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이상	95점 이상	95점 이상	95점 이상

(재해복구 기술용역은 별도)

< 물품구매입찰 >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별표3)

심사항목	물품 규모 별		
	10억 원 이상 (별표1)	10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별표2)	2억 원 미만 (별표3)
계	100점	100점	100
납품이행능력	70	50	30
입찰가격	30	50	70
※ 낙찰가능 입찰가격 하한선	예정가격의 80.495% 이상	예정가격의 80.495% 이상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85점 이상	85점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정함.

※다른 법령에서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예, 환경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적격업체 평가기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등)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사례

문	○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업체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하였을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답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평가하는 바, 적격심사대상자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유한 업체인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

♣ 최적가치(best value) 낙찰제(지방계약법 제13조 2의2항)

1. 정의: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식
2. 대상: 가.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3. 방법: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제 V 장 계약

1. 계약의 체결(§지방계약법 제14조, §공사입찰유의서)

가.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수의계약은 결정 즉시 체결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자치단체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공사 낙찰금액 부기

라. 계약이행기간: 계약체결일로 부터 하자보수 완료일까지

2. 계약문서(§지방계약법시행령 제49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가. 계약문서의 효력

○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구성

1)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2)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3)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물품매각,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4) 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 날인, 간인)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식에 의함(§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함(§전자정부법 제8조)

○ 구성: 계약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필요시), 규격서(물품), 산출내역서로 구성

- 5) 과업이행요청서가 있는 경우 과업이행요청서
 - 6)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 7)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8)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9)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 10)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수기 계약만 인지 첨부
 - 전자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 제외(\$인지세법 기본통칙)
 - 11)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교육기관은 제외
 - 12)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 13)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14)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 15) 하도급 직분을 하는 경우 직분합의서
 - 16)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계약금액 5억 이상은 계약금액의 1/1000 국민주택채권 매입(\$주택법)
 - 법인등기부 등본, 공사면허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 ※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전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별지 1각서> 징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 징구

3. 계약이행보증(§계약법시행령 제51조)

가.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의 10%를 납부하고 시공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의 20%를 납부하는 방법
 다. 공사이행보증기간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40%를 발주기관에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1) 용역의 경우 공사의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 2) 계약체결 이후에도 보증방법 간에는 전환이 가능

라. 납부수단: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비교 >

보 증 방 법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시	
	1 차 적	2 차 적
① 계약보증금납부 +시공연대보증인 입보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 시공	· 보증시공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② 계약금액의 20% 납부 *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음	· 곧바로 계약보증금전액을 귀속	
③ 계약금액의 40%상당 이행보증서 제출	·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 시공	· 책임시공 불이행시 보증서상의 금액을 지자체에 귀속

마.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 2) 3천만원이하의 계약 및 일반적 관습상 보증금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 3)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물품구입이 곤란한 경우
- 4)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동 가치 상당액 이상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가능
- 5)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바. 계약보증금의 귀속(§지방계약법시행령 제54조)

1) 자치단체귀속 사유

-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나)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제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2) 자치단체귀속 절차(§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2조)

- 가)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 나)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징수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또는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어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의 납부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납부조치
 - 동 지급각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

3)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부분 미지급금액과 상계가능 여부(계약법시행령 54조)

-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할 계약보증금중에서 동 미지급금액을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됨(예산총계주의)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귀속사유발생시 상계가 가능함

사. 계약보증금의 반환(§지방계약법시행규칙 61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 1)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 2) 전체공사등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해당 보증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음
- 3)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보증금과 이자를 지급 한다(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원천징수)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고
정기예금 예 탁	만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지방자치단체취급점 (금고)의 정기예금 중 최고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	만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 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4. 하자보수보증제도

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지방계약법 제20조)

1) 하자보수보증금율(§지방계약법시행령 71조)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납부

나)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

2) 하자보수대상(§지방계약법 제20조)

○ 공사, 물품·용역(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음)

3) 하자보수보증의 실손 보상제도(§지방계약법 제21조 3항)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4) 하자보수이행절차(§지방계약법시행령 71조의 2)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

5)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1조)

○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사례

문	○ 하자보수를 신청하였으나 부도 및 연락이 안된 경우 연대보증사에게 하자보수를 신청하게 되는데 연대보증사도 부도나 연락이 되질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사로 부터 직접 수령받아 사용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답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6호(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임

6)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 5항)

가) 준공검사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준용

♠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으로 인한 감액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계약금액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7)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
- 가) 지방계약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면제 할 수 있는 경우
 -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토목사업 및 기타소규모사업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내지 4호에 규정된 자(국가기관등 입찰보증금납부면제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조치(§지방계약법시행령 71조 5항)
- 8)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2항)
-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
 - 나)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 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
- 9) 하자담보 책임기간(§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
 - ※ 개별법령에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담보기간 설정 **예)** 문화재공사(§문화재보호법), 소방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 10)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1조)
-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함
 -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계약보증금 반환방법과 동일)

문	○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답	○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5. 연대보증인제도

가.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지방계약법시행령 51조)

-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 3)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연대보증인의 의무(§지방계약법시행규칙 64조)

-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은 아님)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
- 2) 연대보증인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계약자를 대신하여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받으면 지체없이 당해 의무를 이행(보증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보증이행의무를 짐
- 3)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음

다. 연대보증인의 권리(§지방계약법시행규칙 64조)

- 1)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
- 2)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당해공사에 대한 계속공사에 있어서도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등의 이익을 가짐

라. 연대보증인의 교체등(§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4조)

- 1)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 할 수 있음.

2) 공동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

-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등 당해 계약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함.

6. 공동계약(§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계약운용요령)

가. 공동계약 적용

-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음
- ① 분담이행방식과 ②공동이행방식 ③주 계약자 관리방식의 3가지 형태로 구분

나. 공동계약의 형태 및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 근거	○계약법시행령 제88조	○계약법시행령 제88조	○건설법 제16조 ○계약법시행령 제88조
② 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자금,인력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 종합조정·관리 ○구성원 분담내용으로 구성
③ 대표자 권한	○공동수급체 재산관리 ○대금의 청구·수령	○좌 동	○좌 동
④ 이행 및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1차-구성원,2차-연대보증인)	○구성원 각자 책임 (1차-연대보증인,2차-구성원)	○구성원 각자 책임 (1차-주계약자,2차-연대보증인)
⑤ 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구성원 동의없이 불가)	○각자 책임하에 일부 하도급 가능	○구성원 직접시공 ○주계약자와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⑥현장대리인 선임	○구성원간 협의 선임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선임	○구성원이 분담부분 선임, 주계약자가 총괄 배치
⑦대금지급	○선금은 대표자계좌 기성대가는 구성원의 계좌	○선금·기성대가모두 구성원의 계좌	○선금은 주계약자계좌 기성대가는 구성원의 계좌
⑧ 실적인정	○금액·출자비율로 산정 ○규모·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 전체실적 ○구성원 분담시공부분
⑨ 적용분야	○하자 불분명 공사에 유리 ○건축, 동일구조물공사 등	○분할 용이한 공사에 유리 ○토목, 면허분담공사 등	○전문분야가 복합된 공사 ○건설공사, 소방공사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의하여 겸업제한이 폐지된 (업종)공사에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종합건설 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하는 경우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 (2010년 전면 시행)

7. 계약의 이행

가. 착공 및 착수

1) 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전 현장사진

바)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착공서류 변경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신고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사례

문	○ 계약체결시 착공일을 공사기간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답	○ 공사기간의 산정은 착공일을 기준일로 하여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착공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공사기간 말일을 종료일로 하여야 함

나. 검 사 (§지방계약법 제17조, §공사계약일반조건)

1) 공사의 검사

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함.

-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 마)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 바) 기성 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약식검사가 아닌 정식검사를 실시

2)준공검사 생략(§지방계약법 제17조)

- 계약금액 3천만원미만의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 가능

다. 지연배상금(§지방계약법 제3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 1)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 2)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 3) 불가항력의 사유등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지체일수를 산정방법>

구분	산 정 방 법
1	○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2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3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4)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음.

라. 계약의 해지·해제(§지방계약법 제27조, §공사계약일반조건)

- 1) 계약의 해지: 현재상태에서 중단을 의미(예, 계약상대자가 계약절차 등은 이상이 없으나 계약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계약의 해제: 원인을 소급하여 중단(예,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또는 계약서류 관련 부정행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적발되어 계약을 중단시키는 것)
-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구분	사 유	비고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연배상금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강행규정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구분	사 유	비고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8. 선금지급(\$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가. 선금의 지급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지급대상

○ 대상범위

▷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 설계서상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내인 계약 중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 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을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의무지급율	공사금액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이상	100억원미만 ~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이상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라. 선금지급의 예외

-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

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마.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1) 기성금의 공제

- 선금을 지급전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예, 계약금액 100만원 기성대가부분 10만원 ,선금산정금액 90만원)

2)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

3)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시 선금지급

-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4)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자재과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 회계연도내 지급시

-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출납폐쇄 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봄).

바. 채권의 확보

1) 보증서제출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증서제출의 면제

- 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나)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

3) 보증기간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국내·외 연수는 제외),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사. 선금의 사용 및 정산

1) 선금을 지급시 준수사항

- 가)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나)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
- 라)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아. 선금지급조건

-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 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
- 2)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계약교육 질의응답사례

문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가 아닌 자에게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9. 대가의 지급(§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1) 대가의 지급

○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2)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2억원 이상(전문 1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 공사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 조달청 3자단가 및 총액계약대금 직접지급대상 공사(물품) 포함

바)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사)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자)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 (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차)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국민주택채권(5억이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해당시)
 - 산재·고용보험 가입확인서(산재·고용은 정산규정 없음)
 - 건강·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해당시)
 -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해당시)
 - 환경보전비 정산내역(해당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정산내역(해당시)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해당시)

10.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가. 제도의 개념

-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은 당해연도 내에 한다는 것)의 예외적 제도
- 2) 이월제도의 운영
 - 당해연도 내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유) 계약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시 예산확보 곤란

나. 사업비의 이월방법

1)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가) 명시이월의 정의

-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나) 명시이월의 특성

-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 명시이월 확정

-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후 10일 이내)

행정안전부 질의 응답사례

문	○ 명시이월비는 당해연도에 원인행위할 수 있는지
답	○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된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됨

2)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가) 사고이월의 범위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사고이월의 특성

- 당해연도(12월 말일까지)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 사고이월의 확정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요구는 40일 이내)

제VI장 참고

<예산용어 해설>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사례

배정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을 의미.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됨
재배정	○ 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위임하는 것
배부	○ 배부는 법령상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교부	○ 경비 또는 자금을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

- 지출원(지방재정법 제70조): 지방자치단체 금고로부터 지급명령을 발하는 공무원(수표 발행)

적용예)

-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 제61조에 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본청 각 과장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예산권을 넘기는 것이 배정.
- 그리고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 제62조에 의하여 본청 각 과장이 지역교육청에 예산권을 넘기는 경우가 재배정
- 본청 각 과장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지출원이 없는 직속기관(예, 공공도서관 등)에 예산관리권을 넘기는 경우를 배부로 함
-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 제88조에 의하여 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교부라고 함

[별표 1] <개정 2007.12.2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

	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뿔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뿔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뿔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올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뽐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 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p>·금속구조물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p>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p> <p>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휨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p> <p>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p>
<p>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p>	<p>·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p> <p>·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p> <p>·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p>	<p>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p> <p>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 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p> <p>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p>
<p>9. 철근·콘크리트공사업</p>	<p>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p>	<p>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p>

		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과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 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16. 조경식재공 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 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뿌 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 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 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 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 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 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 공사 등
18. 강구조물공 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 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 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 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 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 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 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 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 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 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 치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 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공사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 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 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 공업(제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 (제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 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p>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 공사</p> <p>·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 하의 온돌설치공사</p>
27. 난방시공업 (제2종)	<p>·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 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 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p> <p>·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 하의 온돌설치공사</p>
28. 난방시공업 (제3종)	<p>·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 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p>
29. 시설물유지 관리업	<p>·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 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 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 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 한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 축·재축 및 대수선 공 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 의 시설물의 경우 증 설·확장공사 및 주요구

		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